

의안
번호

47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7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(제10조)·평등권(제11조)의 과도한 침해이며,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(제69조)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설 이용의 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삭제(안 제9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(행복추구권), 제11조(평등권)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9조)」
- 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2. 09. 29. ~ 2022. 10. 19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,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·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제한(안 제9조제1호) 조문 중 ‘정신질환’자의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69조1)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.

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9조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, 고용,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